

발간사

Brexit로 혼란스러운 시점에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U에서 탈퇴하기로 한 영국국민의 결정은 향후 세계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쩌면 각국은 한층 더 자국 중심으로, 자국 내에서는 지역이나 계층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계기가 될지 모릅니다. 플라톤이 경계했듯이 투표라는 정치행위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 인간이 모여 하는 투표의 정당성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개별 인간이 좀 더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하는 투표의 결과 역시 한층 나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한층 현명해지면 유통규제로 인한 불이익에 한층 민감해질 것이고 그리되면 투표를 통해 의원이 바뀌고 지금의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사라지게 되겠지요.

신청논문은 모두 (사)한국유통법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엄격한 연구윤리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이번 호에는 이봉의 교수님의 “대규모 유통업법상 과징금 산정의 근본 문제”, 문상일 교수님의 “신종 불법파라미드영업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김진우 교수님의 “소비자 철회권의 행사효과에 관한 몇 가지 생침”, 이병준 교수님의 “유통채널로서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유통법적 고찰”, 김종우 교수님의 “중국프랜차이즈사

업에 대한 중국정부 감독관리법률제도의 개선방안 고찰”이 수록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통법 및 유통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주제입니다.

지난 선거로 우리는 새로운 국회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소야대니 협치니 하는 말이 회자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의원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규제에 기생하려는 이익집단의 반소비자적 논리가 아직도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횡행하고 있습니다. 새 국회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강력한 로비스트가 되겠다”며 용기 있게 행동한 캐네디 대통령처럼,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풍이 진작되길 바랍니다. 소비자가 강해져야 기업의 경쟁력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의 발간에는 출판이사이신 이병준, 최난설현 교수님과 여러 편집 위원님 그리고 김은주 부간사의 노고가 컸습니다. 이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최영홍